

## 2021년도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1. 3. 5.(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 권현영, 박성호(분과위원장),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건(안건번호 제2021-22645호~2266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영상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 예컨대 영화 톰과 제리(2021), 영화 몬스터헌터(202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영상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B 위원: 순번 1번~20번{☆☆☆' 사이트의 [중점](영화)덩케르크 (2017) [긴급]'등 21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부 가결 의견임
- C 위원: 안건번호 순번 1번~20번{☆☆☆' 사이트의 [중점](영화)덩케르크 (2017) [긴급]' 등 21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D 위원: 부결대상 안건 없습니다. 모두 가결 처리함이 상당합니다.
- E 위원: 순번 1번~20번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단, 기 삭제되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21년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5.

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권현영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